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77번지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심의일자	2026. 7. 16.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반석건설(주)		
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
	지 번 477	관련지번	
	대지면적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327.6㎡	건폐율	층수 지하: 층/ 지상: 2층
	주 용 도 공사용가설건축물	구 조 경량철골구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 7.1m	용적률	연면적 합계 655.2㎡

구 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 해체분야	○ 식당동 해체 시 북측 현장사무소 진출입로와 간섭이 발생하므로 해체 장비를 진입도로변에 배치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 ○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여 해체공사를 시행할 것 ○ 크레인 인양시 부재별이 아닌 구간별로 해체가 계획되었는데, P42 A~D구간별 인양줄걸이 설치 위치가 정확히 무게중심인지 계산 DATA를 제시 바람. ○ 이동식 크레인 인양능력 검토시 실제 적용될 이동식 크레인 RGT-195A에 해당하는 P35 인양능력표에 작업반경, 붐 길이, 정격총 하중을 해당사항에 표기하여 제시 바람. ○ 조건부 내용 반영하여 공사 착수할 것

심의회결과	☐ 원안 의결 ☒ 조건부 의결 ☐ 재검토 의결 ☐ 부결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